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
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4월 28일, 이용우의원 등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4월 2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25.7.18.)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
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9.16.)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25.9.19.)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
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이용우의원)

2024년 연간 총 임금체불이 역대 최초로 2조원을 돌파하였으며, 2024년에 체불피해근로자에게 지급된 정부의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액도 7,272억 원에 달하였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간 대지급금 지급분 대비 환수분은 2019년 24.8%에서 2024년 21.8%로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액이 기금지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수지차도 2019년 - 307억원에서 2024년 - 1732억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음(총 적립금은 2019년 9587억원에서 2024년 3472억으로 감소).

체불피해근로자를 폭넓게 지원하면서도 대지급금 지급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변제금 미납사업주에 대한 추심강화 등을 통한 회수율 제고 등이 필수적임.

이에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회수에 걸리는 시간과 인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 「근로기준법」은 도급사업에서의 체불임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하수급사용자가 아닌 직상수급인 또는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은 근로자가 체불임금등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대상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직상수급인 또는 그 상위 수급인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상수급인 또는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이나 대지급금 회수 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생략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략

6. 찬반토론의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부대의견

없 음

9.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10.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 음

11. 비용추계서

없 음

12. 기타 사항

없 음